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 660 호

2005년 11월 4일 금요일

차 례

규 칙

- 인천광역시남동구규칙 제649호(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일부개정규칙) 3

공 고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44호(2005.7.1.기준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16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45호(2005.1.1.기준개별공시지가정정결정·공시) 18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0호(도립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예정지(변경)지정공고) ... 21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1호(차량초과에따른자동차탈소등록예고) 22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2호(신조공인(전지이미지공인)공고) 2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3호(공시송달(특별정수주민세10월직권분고지서) 2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4호(공시송달(소득할주민세·재산할사업소세10월직권분고지서, 소득할주민세8월독촉분고지서) 29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6호(분할개시결정공고) 33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7호(환경개선부담금고지서공시송달공고) 34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8호(도시개발사업(간석주공맨션재건축)완료에따른지적공부확정 시행) 35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69호(인천광역시남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37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71호(건축허가취소공시송달공고) 40
-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2005-774호(보상계획(변경)열람공고) 42

인천광역시공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05-204호(악취관리지역지정(안)고시) 53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남동구

편집 : 문화홍보실

규 칙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윤 태 진

2005년 11월 4일

인천광역시남동구 규칙 제649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운영규칙”을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 경기부 운영 규칙”으로 한다.

제2조(설치및구성) 중 “트레이너겸 선수 1명”을 “코치 1명”으로 한다.

제3조(임용)제1항 중 “자격을 갖춘 감독을 구청장이”를 “자격을 갖춘 감독 및 코치(이하 ‘감독·코치’라 한다.)를 구청장이”로 한다.

동조 제2항은 삭제하고, 제3항 내지 제9항을 제2항 내지 제8항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감독, 트레이너겸 선수 및 선수(이하 ‘감독 및 선수’라 한다. 이하 같다.)”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5항 중 “임용된 감독 및 선수에게”를 “임용된 감독·코치 및 선수에게”로 한다.

동조 제6항 내지 제7항의 “감독”을 “감독·코치”로 한다.

제3조의2(정년)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1호 중 “감독”을 “감독 및 코치”로 하고, 제3호중 “트레이너겸 선수, 선수”를 “선수”로 한다.

제3조의3(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성·운영 할 수 있다.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및 문화홍보실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체육관련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실무자가 된다.
5.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신규임용, 재임용, 등급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면직에 관한 사항중 제1호를 제외한 사유에 해당되어 직권면직하는 사항
3. 기타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휘·감독)제1항 중 “소속하에 두고 감독 및 선수는”을 “소속하에 두고 감독·코치 및 선수는”으로 한다.

동조 제3항 중 “운동경기부에 주장을 두되 주장은 감독이 임명하고”를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로 한다.

제5조(복무) 제1항, 제4항 내지 제5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감독·코치 및 선수는 연간 20일 내에서 연가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가 및 경조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22조 및 제 23조를 적용한다.”

제5조(복무)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감독·코치 및 선수는 휴가 등을 실시하기 전에 별지8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작성, 기재하여 부서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제5조의2(훈련)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감독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선수 훈련 상황을 기록·정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면직) 제1항, 제1항제2호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동항 제8호 중 “감독은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를 “감독 및 코치는 선수가 전국체육대회에서”로 한다.

제8조(보수 등) 제1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1항 제1호 관련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동조 제1항 제2호 중 “트레이너겸 선수에게는 별도 수당을 지급한다. 정근수당 및 트레이너수당 지급구분은 ‘별표2’와 같다”를 “정근수당 지급 구분은 ‘별표2’와 같다”로 한다.

제9조(실비보상등)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0조(호봉획정) 제1항, 제4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2항 중 “감독 및 선수의 호봉간”을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 호봉간”으로 한다.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1조(급식비 및 운동수당)제1항 내지 **제2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 특급 : 전년도 국가대표 선수이거나,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자”
- “2. 1급 : 전년도 전국체육대회에서 1위에 입상하거나, 전국규모대회에서 3회 이상을 1위에 입상한 자”

제12조(실비보상)제1항,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13조(보상금)제1항 내지 **제3항**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하고, **제2항** 중 “다만, 감독의 각종대회”를 “다만, 감독·코치의 각종대회”로 하고, **제4항** 중 “다만, 감독의 성과금”은 “다만, 감독·코치의 성과금”으로 한다.

제15조(의료보상) 제1항 내지 **제2항**, **제16조(피복 및 장비지급 등)** 중 “감독 및 선수”를 감독·코치 및 선수“로 한다.

제8조, 제10조 내지 제13조 관련 【별표1】 내지 【별표5】 , 【별표7】 및

제3조, 제5조, 제5조의2 관련 【별지제1호서식】, 【별지제8호서식】, 【별지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1】 및 【별표4】는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코치는 제외한다.

[별표1]

감독·코치 및 선수, 합숙소근무자(조리사) 봉급지급표

개 정 안					개정사유
호봉	감 독	코 치	선 수	합숙소 근무자 (조리사)	공무원의 보수인상에 따른 운동경기부 보수 인상(2.4%)시 육상부 동일기준
1	1,230,150	1,052,660	875,050	479,220	
2	1,252,300	1,073,940	895,580	499,750	
3	1,274,550	1,064,610	916,110	520,270	
4	1,296,810	1,116,730	936,510	540,590	
5	1,318,850	1,138,000	957,050	561,110	
6	1,342,610	1,161,010	979,410	583,470	
7	1,366,710	1,183,910	1,001,330	605,510	
8	1,390,470	1,207,140	1,023,700	627,770	
9	1,414,560	1,230,260	1,045,740	650,020	
10	1,438,330	1,253,170	1,068,100	672,270	
11	1,464,150	1,278,120	1,091,980	696,040	
12	1,489,420	1,302,750	1,115,960	719,810	
13	1,515,140	1,327,490	1,039,730	743,900	
14	1,540,850	1,352,230	1,163,490	767,670	
15	1,566,460	1,377,070	1,187,590	791,650	
16	1,590,230	1,399,980	1,209,730		
17	1,614,100	1,423,100	1,231,990		
18	1,638,190	1,446,000	1,253,910		
19	1,661,960	1,469,120	1,276,280		
20	1,685,940	1,492,130	1,298,430		
21	1,707,980	1,514,160			
22	1,730,230	1,536,430			
23	1,752,380	1,558,560			
24	1,777,530	1,580,830			
25	1,796,560	1,602,750			
26	1,817,200	1,623,280			
27	1,837,610	1,643,800			
28	1,858,250	1,664,440			
29	1,878,670	1,684,850			

[별표 2]

정근수당 지급구분

구 분	호 봉	지 급 액	비 고
<u>감독 및 코치</u>	1호봉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선수 및 조리사	1 호 봉	월봉급액의 60% 해당금액	
	2 호 봉	월봉급액의 70% 해당금액	
	3 호 봉	월봉급액의 80% 해당금액	
	4 호 봉	월봉급액의 90% 해당금액	
	5호봉이상	월봉급액의 100% 해당금액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3]

특별승급 기준

구 분	해 당 성 적	승급호봉	비고
<u>감독 및 코치</u>	· 소속 선수의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3호봉	아래 참조
	· 전국체육대회 1위에 2회이상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 3위 이내 입상	1호봉	
선 수	· 올림픽대회 3위 이내 입상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1위 입상	5호봉	
	· 전국체육대회 2관왕 이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1위 입상	3호봉	
	· 전국체육대회 1위 입상 또는 단체전 3위 이내 입상 ·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 국제대회에 3위 이내 입상 · 임용후 국가대표 선발	1호봉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4]

운동수당 지급구분

구 분		운 동 수 당
감독		매 월 250,000원
<u>코 치</u>		매 월 220,000원
선수	특급	<u>매 월 800,000원</u>
	1급	<u>매 월 500,000원</u>
	2급	<u>매 월 300,000원</u>
	3급	<u>매 월 80,000원</u>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운동수당” 중 지급액 증감 조정

[별표5]

목욕비, 간식비, 업무추진교통비 지급기준

구 분	목욕비	간식비	교통비
<u>감독 및 코치</u>	50,000원	50,000원	100,000원
선 수	50,000원	50,000원	50,000원

※개정안 : “구분” 중 코치 추가

[별표7]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입 상		종 목 별		지 급 액			아래 참조
				1위	2위	3위	
		감 독		250,000	150,000	100,000	
		코 치		<u>200,000</u>	<u>100,000</u>	<u>70,000</u>	
		선 수	단체종합	500,000	350,000	250,000	
			단체종목	350,000	250,000	150,000	
			개인종합	250,000	150,000	100,000	
			개인종목	150,000	100,000	70,000	
기 록 갱 신 (선수)		기 록 구 분		지 급 액			
		대회신기록 (타이기록)		전국체육대회	500,000		
				전국규모대회	300,000		
		한국신기록(타이기록)		800,000			
		세계신기록(타이기록)		1,500,000			

※ 비고

- 1) 입상부분 보상금 지급은 동일인이 단체분야와 개인분야에서 각각 2개이상 입상한 경우 각 분야별 최고 입상성적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 2) 선수의 경우 전국체육대회 및 아시아선수권대회 이상의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각 분야별 입상 횟수에 상관없이 보상금을 지급하며, 전국체육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100%, 국제대회는 그 보상금액의 200%를 추가 지급한다.
- 3) 입상부분과 기록갱신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개정안 : 입상의 “지급기준” 중 코치 및 코치 입상보상금 추가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 주 소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상기자는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23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지도력이 탁월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운동경기부 육상부 감독·코치로 추천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체육회장 (인)

인천광역시 ○○경기단체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소속:인천광역시남동구청운동경기부 직 : 성명 :]

종별	기간 또는 일시			사용 또는 용무	연락처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시간			수명자	체육지원팀장	문화홍보실장

※ 선수의 경우에는 감독의 확인을 받을 것

[별지 제9호서식]

남동구청운동경기부 훈련일지

담당자	체육지원팀장	문화홍보실장	결 재

년 월 일

작성자 : 감독 (인)

참석 현황	참석대상	참석인원	불참인원	불참내역				
				계	선수준입소	연가	병가	기타
훈련 현황	훈련 시간		훈련 내용		훈련 장소			
특이 사항								

□ 제안이유

- 2005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현실에 맞게 운동경기부에 반영함으로써 후생복지 및 사기진작을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개인기량과 팀전력 향상을 위해 코치를 두어 체계적인 훈련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운동경기부의 구성 중 '트레이너겸 선수'를 '코치'로 변경(안 제2조)
- 운동경기부심의위원회 신설(안 제3조의3)
- 감독·코치 및 선수의 공가 및 경조사 적용기준 보완(안 제5조제3항)
- 감독·코치 및 선수의 근무상황부 작성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항)
- 감독의 선수훈련상황 관리 조항 신설(안 제5조의2제4항)
- 운동경기부 봉급지급표 조정(안 제8조제1항 별표1)
- 운동경기부 운동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제11조제2항 별표4)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44 호

2005.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0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2005. 10.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2005.1.1~6.30까지 분할 ·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05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05년 7월 1일 기준
- 대 상 : 653필지
- 결정내역 : 토지 지번별 m²당 가격 (개별통지)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11. 1 ~ 11. 30 (30일)
- 제출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출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방 법 : 남동구청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723, 2725, 2727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 의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⑤소재지및지번				
	⑥지 목		⑦실제이용현황		
	⑧지 가	원/m ²			
⑨신청 요지	· 상향요망() · 하향요망() · 신청인 희망가격 : 원/m ²				
⑩신청 이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 월 31 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의를 신청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 ⑨신청요지는 상향·하향가격을 제시한다 ⑩신청이유는 신청요지의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신청요지, 신청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45 호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결정·공시합니다.

2005. 10. 31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 결정·공시

- 대 상 토 지 : 장수동 411외 2필지
- 정 정 년 도 : 2005년 1월 1일기준
- 결 정 내 용 : 토지 지번별 가격(원/㎡) 【내역 별첨】

■ 이의신청

- 기 간 : 2005. 11. 1 ~ 2005. 11. 30(30일)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 방 법 :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처 : 남동구청 민원지적과 토지관리팀 [(032)453-2723]

2005년 1월1일기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 내역(단위:원/m²)

토지소재지	당초지가	정정지가	비 고
장수동 411	577,000	401,000	
장수동 산78	2,310	5,280	
남촌동 510-8	142,000	139,000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 의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번호:)			
	④소유자와의 관계				
대 상 토 지	⑤소재지및지번				
	⑥지 목		⑦실제이용현황		
	⑧지 가	원/m ²			
⑨신청 요지	· 상향요망() · 하향요망() · 신청인 희망가격 : 원/m ²				
⑩신청 이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10 월 31 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2005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이의신청관련 참고자료(참고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없 음
※ 기재요령 : ⑨신청요지는 상향·하향가격을 제시한다 ⑩신청이유는 신청요지의 사유를 기재한다					
※ 동일인이 여러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대상토지와 신청요지, 신청이유 항목에 대하여 별지로 기재하여 첨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0 호

도림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예정지(변경) 지정 공고

1. 2005. 10. 28일자 인천광역시 개발계획과-6469호로 환지계획변경인가를 득한 도림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아래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변경지정 공고합니다.

아 래

종전의 토지			환 지 예 정 지					
			당 초			변 경		
동명	지번	면적(m ²)	블럭	롯트	면적(m ²)	블럭	롯트	면적(m ²)
도림	194-1	438	36	7	435.4	31	1	199.3
						31	2	244.3
도림	195-5	510	36	4	304.8	6	9	346.0
도림	236-6	433	36	1	293.8	5	8	166.4
						6	8	199.7
도림	244	215	5	8	166.4	244-2에 병합		
도림	244-1	515	6	9	346.0	36	4	304.8
도림	244-2	331	6	8	199.7	36	1	293.8
도림	358-7	261	31	1	199.3	36	7	435.4
	358-15	1	31	2	244.3			
	358-16	401						

2. 본 공고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7조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등에게 변경된 환지예정지에 대한 권리가 부여되며, 종전의 토지 및 환지예정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습니다.

3. 환지예정지 변경지정에 따른 환지예정지의 사용은 대지정지공사의 완료 및 사업시행상의 장애요인이 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부여(환지예정지사용허가) 합니다.

4. 환지예정지에 대한 관련도서는 남동구청 도시계획과(☎453-2694)에 비치하고 환지예정지증명원은 민원지적과에서 발급합니다.

5. 환지예정지(변경) 지정내용에 대하여는 개별 통보되거나 미수령되는 경우에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5년 10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1 호

차령초과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 예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차령이 초과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지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께서는 2005. 11. 14일까지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 권리행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폐차 말소등록 처리를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10. 31 ~ 2005. 11. 14(15일간)
2. 대상 자동차

신청대상차량			이해관계내용	이해관계인	송 달 지
자 동 차 등록번호	성명	사용본거지			
인천30라6937	장숙희	동춘동 301	인천지방법원 (98카단34328)	김성지	서울.서초.방배동 2191

3. 문 의 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교통과 차량등록팀(☎453-3977)

2005. 10. 3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2 호

공 고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신조(전자이미지공인)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신조 사유 : 지방세프로그램(세돌이)을 이용한 교부청구 및 부동산 압류 및 해지사항 등록후 청구서 및 조서 출력시 날인
2. 신 조 일 : 2005. 11 . 10
3. 신조 공인(전자이미지공인)명 인영

신조공인명(전자이미지공인)	인 영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2 0 0 5 . 10.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3 호

공 시 송 달

성 명 진은기업 외 114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특별징수 주민세 10월 직권분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5년10월 직권분 특별징수 주민세 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로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및 , “이사”, “반송함 장기방치”, “폐업” 등으로 반송 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5.11.21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05.10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 고
1	진은기업	120111-0087924	인천 남동구 구월3동 1406-8번지	29,390	510 000001	수취인미거주
2	웅비토건 (주)	110111-109551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3번지 웨미리프라자 402호	45,950	510 000003	수취인미거주
3	건노	120111-0144628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4번지 (구:건일)	24,210	510 000007	이사
4	모토건축사사무소	120111-015712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6-2번지 앤하탄빌딩 1027호	220,150	510 000008	수취인미거주
5	상우약품	124611-0288066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27-21번지 2층상가	18,420	510 000032	이사
6	케이티에스	120111-0295007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26-7번지 기한빌딩801호	141,530	510 000034	반송환장기방지
7	세진리모델링	120111-030209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1-1번지	26,430	510 000035	이사
8	김병진	690322-1069229	서울 관악구 신림6동 354-67번지	14,480	510 000042	반송환장기방지
9	(주) 모바일아이앤씨	110111-220938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번지 노블리인4층 4호	42,640	510 000046	이사
10	태일종합건설 (주)	124611-0264339	경기 시흥시 신천동 766-3번지	14,410	510 000052	수취인미거주
11	아나벨코리아	120111-0218611	인천 남동구 구월동 - 620-20번지	171,350	510 000056	수취인미거주
12	스카이가구	120111-02970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6-9번지 지하	115,670	510 000068	수취인미거주
13	스카이가구	120111-0297003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06-9번지 지하	29,770	510 000069	수취인미거주
14	(주) 코리아통신	124611-028321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235-6번지 청호빌딩 1층	13,550	510 000074	수취인미거주
15	모바일아이앤씨	110111-2209389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17번지 노블리인4층 417호	13,160	510 000082	이사
16	지산종합건설	120111-034783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58-6번지	5,220	510 000087	수취인미거주
17	해일리	120111-0121567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131-11번지	145,860	510 000100	반송환장기방지
18	위맥스	110111-0956891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448번지	13,230	510 000101	이사
19	김병진	690322-1069229	서울 관악구 신림6동 354-67번지	38,190	510 000113	반송환장기방지
20	(주)한구엔지니어링	110111-07450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21번지 풍년빌딩 5층	2,315,410	510 000114	이사
21	(주)한구엔지니어링	110111-074501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21번지 풍년빌딩 5층	2,430,120	510 000115	이사
22	준외식산업	120111-0336091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31-13번지 백세빌딩 7층	19,160	510 000118	반송환장기방지
23	정택건설	135011-0106887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86번지 구월빌딩 405호	445,630	510 000121	이사
24	웅비토건 (주)	110111-1095515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3번지 웨미리프라자 402호	245,310	510 000129	수취인미거주
25	건노	120111-0144628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4번지 (구:건일)	1,878,150	510 000130	이사
26	건노	120111-0144628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94-4번지 (구:건일)	1,988,640	510 000131	이사
27	박희영	610620-1046835	인천 연수구 선학동 397-11번지 우성주택 2-103	41,390	510 000136	반송환장기방지
28	송은아	720210-2638119	인천 부평구 삼정2동 607번지 신동아파트 107-1605	25,520	510 000139	반송환장기방지
29	지산종합건설	120111-0347832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58-6번지	17,010	521 000004	수취인미거주

05.10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 고
30	일토종합건설	120111-0105826	인천 남동구 간석동 166-10번지 대호빌딩 3호	51,450	530 000001	이사
31	공명노	600728-1150017	인천 남구 문학동 386-9번지 경인그린빌라 마-203	11,550	530 000016	수취인미거주
32	이원준	581002-1057627	인천 부평구 부평3동 284-141번지	3,580	530 000024	수취인미거주
33	한국안전엔진및게시	110111-1765770	주소없음	11,730	530 000034	이사
34	매직코리아	120111-0188690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1동 114-1번지 무광빌딩 807-A	18,330	530 000052	수취인미거주
35	박석순	610719-1149310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4-1번지	113,240	530 000054	수취인미거주
36	(주)미도건설	120111-0006719	인천 남동구 간석동 173-29번지	131,790	530 000057	수취인미거주
37	강건수	650905-1639215	인천 서구 당하동 원당지구 108번지 블랙 3로트 금호아울렛아파트 303-702	41,520	530 000061	수취인미거주
38	김계욱	650310-2346319	경기 화성시 매송면 원팔리 91-14번지 금강빌라 B-301	1,027,000	540 000013	폐업
39	성도기업	124611-0278257	인천 남동구 간석동 770-8번지 (2층)	200,220	550 000009	수취인미거주
40	(주)엘지간석서비스	124611-0249737	인천 남동구 간석1동 617-24번지 하이프라자1층	250,140	551 000001	수취인미거주
41	엘지간석서비스	124611-0249737	인천 남동구 간석동 617-24번지 하이프라자1층	43,640	551 000002	수취인미거주
42	주산	120111-0160284	인천 남동구 간석4동 616-57번지	36,040	551 000003	수취인미거주
43	주홍일	640909-1221133	인천 부평구 산곡4동 274번지 경남2자아파트 205-801	33,420	560 000010	반송할장기발지
44	신세계개발주식회사	121111-0064964	인천 남동구 안수동 967-8번지 거신빌딩402호	1,373,260	560 000011	이사
45	초록건설	120111-0221169	인천 남동구 안수동 961-33번지	100,140	560 000013	수취인미거주
46	에스환경시스템	124611-0238582	인천 남동구 안수5동 884-1번지	592,090	560 000022	이사
47	지에이취피코리아 (주)	120111-0295726	주소없음	297,410	560 000029	이사
48	지에이취피코리아 (주)	120111-0295726	주소없음	39,550	560 000030	이사
49	(주) 상환종합건설	120111-0177429	인천 남동구 안수동 916-14번지	50,930	560 000045	반송할장기발지
50	(주) 도원건설	174811-0009385	인천 남동구 안수동 987-8번지	13,530	560 000052	수취인미거주
51	덕천토건 (주)	120111-0203836	인천 남동구 안수동 1077-4번지 4층	129,700	560 000054	이사
52	남동건설	120111-0219825	인천 남동구 안수6동 1024번지 상일빌딩 2층	14,080	583 000001	수취인미거주
53	이기술	700115-1640156	경기 부천시오정구 작동 63-1번지 남영아트빌 가-401	18,380	650 000001	수취인미거주
54	이기술	700115-1640156	경기 부천시오정구 작동 63-1번지 남영아트빌 가-401	15,950	650 000004	수취인미거주
55	형일산업 (주)	120111-0172320	인천 남동구 논현동 451-4번지 공단 24블락5로트	33,330	660 000002	수취인미거주
56	레이원텍	131111-0119543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3-9번지	5,250	660 000019	수취인미거주
57	이강공업(주)	110111-0647177	인천 남동구 남촌동 611-2번지 3586L	132,250	660 000028	이사
58	신철웅	740614-1664224	인천 남동구 간석1동 499-6번지	15,590	660 000031	반송할장기발지

05.10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 고
59	신건창산업	124611-0233826	인천 남동구 남촌동 320번지 풀림1차상가	3,815,710	660	000032 수취인미거주
60	최영재	520319-1025416	경기 부천시원미구 중2동 1189-2번지 그린타운아파트 1134-1901	26,730	660	000037 수취인미거주
61	(주) 케이엠피테크	124611-0255726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15번지 남동공단37-16	9,460	660	000041 수취인미거주
62	영조건설주식회사	124611-0258754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5-13번지	54,960	660	000042 이사
63	(주)서광엔지니어링	120111-0125171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4-4번지 남동공단13185L	23,040	670	000008 수취인미거주
64	남지기계	110111-0576996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9-9번지 남동공단92810L	211,540	670	000009 수취인미거주
65	아이테크	110111-0740278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9번지 남동공단146810L	219,490	670	000010 수취인미거주
66	아이테크	110111-0740278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5-9번지 남동공단146810L	218,620	670	000011 수취인미거주
67	싸이언텍	120111-0166654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6-7번지 남동공단 1178 9L A-104	192,280	670	000015 반송할증기방지
68	두원테크	120111-016559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번지 남동공단 85-14	146,790	670	000016 수취인미거주
69	두원테크	120111-016559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번지 남동공단 85-14	162,250	670	000017 이사
70	코스믹	120111-0175275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8-1번지 남동공단1088-4L	121,500	670	000021 수취인미거주
71	에이스인양 (주)	120111-0179136	인천 서구 가좌1동 178-63번지	134,390	670	000024 수취인미거주
72	(주) 보광테크	120111-0186587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6-4번지 공단478-5L	225,680	670	000030 수취인미거주
73	상경피에스시스템	110111-1589998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0-5번지	79,810	670	000035 수취인미거주
74	상탑다이어테크	110111-1942039	인천 남동구 고잔동 705-3번지 남동공단1348-4L	109,830	670	000039 수취인미거주
75	나래전자	120111-0181446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7-3번지 남동공단 16-4	21,160	670	000046 수취인미거주
76	해인산업개발 (주)	124611-0241858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2-11번지	404,410	670	000047 수취인미거주
77	보성초음파산업	121111-0090216	인천 남동구 논현동 431-1번지 남동공단 18-7	782,080	670	000050 이사
78	태불에너지기술 (주)	120111-03339194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7-5번지 1 6 블럭 6 롯데	71,300	670	000067 수취인미거주
79	남지기계	110111-0576996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9-9번지 남동공단92810L	154,880	670	000069 수취인미거주
80	우방공업	110111-1046237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5-7번지 남동공단99블럭 8롯데	4,950	670	000093 수취인미거주
81	한국해나기업(주)	120111-0136772	인천 남동구 논현동 428-3번지 남동공단208-4L	27,500	670	000094 수취인미거주
82	두원테크	120111-016559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번지 남동공단 85-14	32,870	670	000102 수취인미거주
83	두원테크	120111-016559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번지 남동공단 85-14	9,444,200	670	000103 이사
84	두원테크	120111-016559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76-16번지 남동공단 85-14	90,090	670	000104 이사
85	플루텍	110111-2735144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5-6번지	47,200	670	000113 반송할증기방지
86	듀크테크놀로지스	120111-0207945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1-3번지	135,030	670	000132 수취인미거주
87	에스엠펙퍼레이션	120111-0233916	인천 남동구 고잔동 489-4번지	43,930	670	000137 이사

05.10월분 주민세 특별징수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세 액	과세번호	비 고
88	정금순	510723-2144417	인천 남구 용현5동 627-78번지 한양아파트 6-1003	21,280	670 000147	수취인미거주
89	강성혜	560320-2046114	서울 양천구 신정7동 337번지 목동2차우성아파트 212-1107	12,330	670 000159	수취인미거주
90	현승기계공업	124611-0276863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9-4번지 남동공단 120-5	53,960	670 000160	반송함장기방지
91	운용피씨엔씨	124611-025734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63-17번지 988 18L	17,900	670 000173	수취인미거주
92	우리산업엔지니어링	120111-029951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7번지 산업공단빌딩 308호	12,950	670 000175	수취인미거주
93	로얄인더스트리	120111-0309072	인천 남동구 고잔동 742-12번지 남동공단1708L-14LT	38,290	670 000177	수취인미거주
94	이노팩	120111-0338154	경기 안산시단원구 초지동 742-3번지 다인타운 5층 (주)대보 내	141,770	670 000180	수취인미거주
95	엠에스리씨이클링	120111-0361311	인천 서구 원창동 393번지 한진모세사창고 Q블럭	74,160	670 000186	수취인미거주
96	영광물류	135511-012071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1번지 C-323	59,800	670 000189	수취인미거주
97	제이제이콜프코리아	120111-0202268	주소없음	51,330	670 000194	이사
98	고영기	660523-1405813	인천 서구 원창동 원창지구 69번지 블럭1로트 웰지원당자이아파트 707-1105	14,040	670 000203	반송함장기방지
99	오진복	600229-1055114	경기 안산시 분오2동 871번지 신안아파트 113-1306	11,260	670 000207	수취인미거주
100	이장우	610114-1053124	인천 계양구 작전1동 26-1번지 뉴서울아파트 202-1901	16,010	670 000222	수취인미거주
101	동상인테리어	120111-0167826	인천 남동구 고잔동 730-7번지 남동공단 156-8	17,330	670 000230	이사
102	전택석	520128-1626019	인천 남동구 구월2동 1251번지 원경아파트 304호	18,410	670 000237	수취인미거주
103	인택	120111-0158734	인천 남동구 구월동 1449-10번지 케이티엔지빌딩 502호	21,860	670 000249	수취인미거주
104	주식회사효성중전기	120111-0186579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0번지 공구상가 A-128	11,230	670 000252	수취인미거주
105	경일산업	120111-0194184	인천 남동구 고잔동 710-4번지 남동공단 139-11	15,480	670 000254	이사
106	신명균	700607-1140318	충북 진천군 이월면 송림리 512번지 (1/8) 대승산내들APT 101-805	171,340	670 000259	반송함장기방지
107	서울경금속	120111-0002535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9번지 -0000(00/0)	1,210,120	670 000265	수취인미거주
108	아론테크	120111-0143264	인천 남동구 고잔동 640-6번지	4,155,160	670 000266	수취인미거주
109	맥아이디에프	120111-0227084	인천 남동구 고잔동 655-4번지 남동공단 112블럭 5롯데	679,800	670 000270	이사
110	엔에스정공	124611-024343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92-14번지 남동공단2단지 122-15	319,450	670 000272	수취인미거주
111	두광기술산업	120111-0316340	인천 남동구 고잔동 532번지	42,470	670 000277	수취인미거주
112	편테크	134111-0084206	인천 남동구 남촌동 627-12번지 남동공단 39B-11L	46,530	670 000289	이사
113	우리산업엔지니어링	120111-0299512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7번지 산업공단빌딩 308호	15,090	670 000306	수취인미거주
114	(주) 부광	120111-0342535	인천 남동구 고잔동 727-6번지 남동공단156블럭7롯데	24,150	670 000308	수취인미거주
115	메니아전자	120111-0348533	인천 남동구 노원동 429-9번지 남동공단 21B-11L	39,890	670 000309	수취인미거주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4 호

공 시 송 달

성 명 최경복외 12건, 안효근외 5건, 신성아이카써비스외2건

주소 또는 거소 내역별첨

서 류 의 명 칭 소득할 주민세 10월직권분고지서, 소득할주민세 8월독촉분고지서
재산할사업소세 10월직권분고지서

서 류 의 내 용 2005년 10월분 소득할주민세,재산할사업소세 직권고지서
2005년 8월분 소득할 주민세 독촉고지서

위 서류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및 사업장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및 “수취인 부재”, “이사감”, “우편물 장기방치”, “주소불명”등으로 반송처리되어 송달이 불능인 바, 납기를 2005.11.21일로 변경하여 남동구청에 납부하여 주시기를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05.10월분 소득할주민세 직권분 공시송달

연번	성명	주민번호	주소	과세번호	세액	비고
1	최경복	610517	구월1301-22 용일맨션102	104004-0510-510-5	144,660	수취인 미거주
2	김철수	510413	만수907-19 남경다세대101	104004-0510-560-1	122,170	수취인 미거주
3	김영환	410910	충북진천군 초평면용정리399	104005-0510-510-1	509,000	수취인 미거주
4	성창연	680823	구월342-1 신세계4/1407	104005-0510-510-6	373,880	수취인 부재
5	문은숙	641208	간석616-6 범양102/402	104005-0510-530-5,6	406,970 103,870	수취인 부재
6	김성현	530811	간석37-317 현대빌라2/403	104005-0510-530-9	315,010	이사감
7	김선희	510516	만수859-2 이성1/101	104005-0510-560-2	248,640	수취인 부재
8	김영자	531205	만수1042 광명106/406	104005-0510-560-4	300,580	수취인 부재
9	박성록	610203	연수선학397-7 3호-101	104005-0510-560-17	1,341,740	수취인 부재
10	김정화	680222	만수1048 금호102/1704	104005-0510-560-18	388,650	수취인 미거주
11	김남순	320929	남동 도림635-6 201호	104005-0510-660-1	292,100	이사감
12	권성무	500129	남동 도림358-11	104005-0510-660-2	981,020	수취인 부재
13	신애중합 목재	120111	남동고잔631 산업용품상가D/245	104006-0510-510-18	72,640	수취인 미거주
		이	하	여	백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6 호

분할개시결정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었기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일 이내에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05. 10. 31 ~ 2005. 11. 28.

2. 공고내역 :

토 지 표 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 군 구	읍 면	리 동	지 번	지 목	면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남동구	-	만수동	873-32	대	160.3	박상용	42.09.02	인천 연수 동훈925-7 대우2차아파트 109-207	-
남동구	-	논현동	68-23	대	499	김임배	51.08.03	인천 연수 동춘동 731-8	박대현외4인

2005년 10월 31일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인)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7 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에 대해 수취인미거주,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05. 11. 1.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05. 11. 1. ~ 11. 15.(14일간)
2. 공고대상 : 내역별첨
3. 공고사유 : 2005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송달불능
4. 본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환경위생과 (032-453-2430)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8 호

공 고 문

간석주공맨션재건축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지적사무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확정 시행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5. 11. 2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1. 지적공부 시행내역

토지 소재	폐 쇄			작 성			사업명	
	지 번	지 목	면 적	지 번	지 목	면 적		
간석동	286-1	대	64.0	938-1	대	56,025.2	간석주공맨션 재건축정비사업	
	286-3	대	65.2	938-2	대	2,183.2		
	286-5	대	79.0	938-3	대	99.9		
	286-6	대	48.9	938-4	대	71.6		
	286-8	대	58.0	938-5	대	146.5		
	286-9	대	101.2	938-6	대	897.4		
	286-10	대	64.0					
	286-11	대	47.1					
	286-12	대	130.0					
	286-14	대	83.2					
	286-15	대	48.9					
	287-3	대	679.6					
	289-6	대	695.2					
	291-3	대	523.6					
	295-7	대	202.2					
	296-4	대	348.2					
	296-5	대	2,507.5					
	296-6	대	303.5					
	298-4	대	943.0					
	301-9	대	717.9					
	301-10	대	11,905.7					
	344-1	대	38,795.9					
	344-3	대	201.8					
	346-4	대	327.5					
	348-3	대	417.9					
	350-1	대	64.8					

2. 지적공부 작성목록

- 토지대장 : 6필지, 59,423.8m²
- 지 적 도 : 5장(축척 1/500)
- 경계점좌표등록부 : 6매

3. 시 행 일 : 2005. 11. 2

4. 공고기간 : 2005. 11. 2 ~ 2005. 11. 9(7일간)

5. 문의사항 : 자세한 사항은 우리구 민원지적과 032)453-2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69 호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0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

1. 조 례 명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및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대상업체 및 금액결정에 있어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관내 기업체에서 필요한 시기에 자금이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융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일부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융자 대상업체 및 금액 결정시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도록 되어 있는 조례 제9조 융자대상자 선정 중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함 (안 제9조)

4.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5. 11. 23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참조: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 453-2526, FAX 453-2479)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 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5. 붙 임 :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남동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용자대상자 선정) ①구청장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u>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u>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용자대상자 선정) <u>구청장은</u>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용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u>(삭제)</u> 용자대상자 및 용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71 호

건축허가 취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건축허가 후 장기 미착수 현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건축허가 취소를 예고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등으로 송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에서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2004. 11. 04.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공고기간 : 2005. 11. 04 ~ 11. 18(15일간)

대 상 : 별첨

제 목 : 장기 미착공 건축물 건축허가 취소

1. 건축법 제8조(건축허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득 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2. 귀하께서 우리 구로부터 건축허가를 득 한 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불임의 건축물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것임을 행정절차법 제22조(처분의 사전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하오니, 이의가 있으실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서를 2005. 11. 18까지 우리 구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일 위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건축법 제8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취소됨을 공시송달 합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구 건축과(☎032-453-2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취소 대상

연번	허 가 번 호	대 지 위 치	건축주	연면적	허가일	주용도
1	2003- 건축과- 신축허가- 244	인천 남동구 만수동 58-5	안순흥	258.62	03-08-06	단독주택

인천광역시남동구공고 제 2005 - 774 호

보 상 계 획(변 경) 열 램 공 고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계획(변경)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제 15조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5. 11. 4.

인 천 광 역 시 남 동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
2. 사업의종류와명칭 : 시립도서관 이전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규모 : L=230M, B=10M
4.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615-2번지 부근
5. 보상시기 : 2005. 11월
6. 보상금지급처 : 남동구청건설과
7. 보상대상
 - 토지보상 : 구월동 615-2외 8필지
 - 지 장 물 : 도로개설 구간에 저축되는 지장물에 한함
8.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에 의거 보상액을 산정하고 개별로 협의체결후 현금보상
9. 보상절차 : 보상에 필요한 서류 및 보상금액은 추후 개별 통지
10. 열람기간 : 2005. 11. 4 - 2005. 11. 18(15일간)
11. 열람장소 : 남동구청 건설과
12. 기타사항
 -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 및 동시행령 제28조에 의거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 ② 토지조서등은 남동구청건설과에 비치하고 열람하며 이의 있으신 분은 건설과에 문의 또는 이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공고에 대한 서류송달은 소유자등에 대하여 개별통지 하였으나, 미수령시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용 지 조 서

시범도시권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M2)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	지번		공부	편입	잔여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구월동	613-5	전	48	20	28	남동구				
2		614-1	전	123	123	-	남동구				
3		1070	구	2,489	435	2,054	농림부				
4		614-3	전	23	23	-	김숙경	남동구 간석동 332-4			
5		614-2	전	148	148	-	김숙경	남동구 간석동 332-4			
6		615-2	전	43	43	-	최진태	남구 주안동 303-21	남동농업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906(석암지소)	근저당외 1
7		615-3	전	394	394	-	최진태	남구 주안동 303-21	남동농업협동조합	남동구 만수동 906(석암지소)	근저당외 1
8		613-4	전	73	73	-	김영복외 1인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파트 103동 1106호			
9		611-3	답	345	345	-	한봉희	남동구 수산동 50-1			
10		610-7	전	5	5	-	장숙희외 3인	중구 진동 7-27			
11		609	전	160	160	-	손병수	남구 주안동 547-19			
12		610-8	전	216	216	-	남동구				
13		610-6	전	3	3	-	남동구				
14		610-9	임	5	5	-	남동구				
15		610-5	임	209	209	-	남동구				
16		643-5	과	121	121	-	남동구				
17		643-4	과	18	18	-	김규섭외 2인	남구 송의동 438-146			
소계				4,423	2,341	2,082					

입 목 조 사 대 장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수종	경크		주수 (본)	관리 상태	소유자		비고	
	동명	지번		높이(h)	지름(φ)			성명	주소		
1	구월동	614-2	매실나무		15	1	양호	차춘식	구월동 1129-17,-18		
					20	2	양호		(대광조경) TEL: 441-1104~5		
			연신흥	1		23	양호				
				1.5		39	양호				
			메타세코야		20	1	양호				
			배나무		5	11	양호				
					8	1	양호				
					10	4	양호				
			회화나무		8	6	양호				
					8.5	7	양호				
			앵두나무	1.5		14	양호				
				1.8		16	양호				
			신사나무		5	1	양호				
					6	1	양호				
				1.5		1	양호				
			보리수나무				양호				
			소나무		15	1	양호				
					40	7	양호				
	뒷면 계속...										

입 목 조 사 대 장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제 지		수 종	경 급		주 수 (본)	관 리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높이(h)	지름(φ)			성 명	주 소			
1	구월동	614-2	팽나무		10	2	양호	차 춘 식	구월동 1129-17,-18			
					12	1	양호		(대광조경) TEL: 441-1104~5			
			왕벚나무		10	2	양호					
					12	4	양호					
					15	1	양호					
			참나무		8	2	양호					
			오엽송	1.5		1	양호					
				2		2	양호					
				3		2	양호					
			신수유		8	2	양호					
			은행나무		8	3	양호					
						50	1	양호				
			이팝나무		12	1	양호					
			목련나무		5	3	양호					
					8	6	양호					
					10	2	양호					
					12	1	양호					
뒷면 계속...			무궁화	2		3	양호					

임 목 조 사 대 장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 제 지		수 종	경 급		주 수 (본)	관 리	소 유 자		비 고	
	동 명	지 번		높이(h)	지름(φ)			성 명	주 소		
1	구월동	614-2	신주목	2.5		1	양호	차 춘 식	구월동 1129-17,-18		
				3		2	양호		(대광조경) TEL: 441-1104~5		
			사철나무	2		3	양호				
			등근향나무				양호				
			모과나무		8	1	양호				
					15	1	양호				
				7	30	1	양호				
			측백나무	2		75	양호				
			갯나무	2		2	양호				
			향나무	3		2	양호				
			꽃복숭아	3	8	2	양호				
			홍단풍		15	4	양호				
					20	2	양호				
			청단풍		10	4	양호				
			느티나무		10	1	양호				
					20	1	양호				
					30	1	양호				
	덧 면 계 속...			5		1	양호				

시립도서관 이전 신축 진입도로 개설공사

[illegible]

서 조 물 장 지

[illegible]

인천광역시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2005 - 204호

악취관리지역 지정(안) 고시

악취방지법 제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지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1월 1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지정목적

악취민원이 많은 문제지역 및 취약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함으로서 시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함.

2. 지정 대상지역 위치 및 면적, 악취현황

구 분	지정대상 지역명	위 치	면적(천㎡)	복합악취농도 (기 준)	비고
남동구	남동국가산업단지 전지역	고잔·논현·남촌동지역	9,574	14배(20배)	공업지역
서 구	서부지방산업단지 전지역	경서동지역	938	8배(20배)	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1,2,3매립장)	백석·경서·검암동지역	11,107	17배(15배)	기타지역
	석남동·원창동 공업지역	석남·원창동지역	3,782	21배(15배)	기타지역

3. 지정 대상지역 악취배출시설 관리계획

- 악취관리지역내 악취실태 조사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
-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관리지역 관리 강화
- 악취오염도 검사 정례화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악취배출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D/B 정보자료 구축 및 분류
- 사업장별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기업지원(자금 및 기술 지원) 등

4.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2005. 11. 1 ~ 2005. 11. 14(14일간)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고시공고란)
 - 인천광역시청 환경보전과[각 군·구 환경위생(녹지)과]
- 연락번호 : TEL 032-440-3524, FAX 032-439-8784
- E - mail : babyel@incheon.go.kr

5. 참고사항

- 의견제출 방법
 - 동 지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한 의견서를 열람기간내에 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 환경보전과)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전자문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일정

- 장 소 : 인천상공회의소(남동공단 29B-1L)
- 일 시 : 2005. 11월 11일(금)(14:00~16:00)
- 대 상 : 남동공단 입주업체 및 인근지역 주민
(남동구, 연수구)